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8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이학영·박홍배·김주영

이용우 · 백승아 · 박 정

정혜경 • 이정문 • 정준호

문금주 · 김영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,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.

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,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.

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 각심을 강화하고,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의3, 제76조의4·제76조의5 신설). 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 항) 전단 중 "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를"을 "피해근로자등을"로 한다.

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피해근로자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가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장의2에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4(명단 공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장 내괴롭힘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(사용자가 법인

- 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) 등을 공개 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·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정보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6조의5(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) ①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해당 사업장의 사용주는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주가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9조제1항 중 "제76조의3제6항을"을 "제76조의3제7항을"로 한다. 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4항·제5항·제7항"을 "제5항·제6항·제8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자가 제76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①・② (생 략) 시 조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조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 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는 근로자(이하 "피 해근로자등"이라 한다)가 추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 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조사 과정에 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 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피 해근로자등과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신고된 자가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 여야 한다.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 -----피해근로자등을--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근로자(이하 "피해근로자

등"이라 한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u>④</u> ~ <u>⑦</u> (생 략)

<신 설>

<u>⑤</u> ~ <u>⑧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)

제76조의4(명단 공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라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소재지(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소재지를 포함한다) 등을 공개 할수있다. 다만, 사망・폐업으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사

 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

<신 설>

재지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 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 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 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 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렁으로 정한다.

제76조의5(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)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주는 객관적 조사를 위하 여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반 제109조(벌칙) 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 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 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<u>제76</u>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2조, 제48조, 제66조, 제74조제7항・제9항, 제76조의3제2

<u>을 수 있다.</u>	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주기	<u> </u>
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	_
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	- -
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	!
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	L
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	ŀ
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	ŀ
<u>다.</u>	
에109조(벌칙) ①	_
	_
	_
	_
<u>제76</u> 조의3제7항을	_
	_
② (현행과 같음)	
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겉	Ļ
<u>수</u>)	
2	_
	-
1. (현행과 같음)	
2	-
	-
	_

항 · <u>제4항 · 제5항 · 제7항</u>, 제 --<u>제5항 · 제6항 · 제8항</u>-----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. • 4. (생략)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